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46호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5월 25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내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제정에 따른 상위 조례 개정과 국토교통부 훈령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내 신기술 사후평가서 서식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규칙에 반영하여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예규를 반영하여 사업부서에서 자체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적정 공법을 선정토록 상위 조례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2조, 안 제5조)

나.「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에 따른 신기술 사후평가서 서식 변경(별지 제6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기술심사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술심사과(전화 : 051-888-2515, FAX : 051-888-2519, E-mail : nsheo@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규칙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법무계약 → 행정·법무 → 자치법규 →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와 제5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기술 사후평가서

작성일: 년 월 일

1. 신기술 및 공사개요

신 기 술 명	(지정번호 :)
기술개발자	

공사개요	발주자		시공자	
	개발자 참여형태	□ 직접참여(기술사용료 미지급) □ 기술지도(기술사용료 지급) □ 자재, 장비 납품		
	공사명 (계약명)	도급 공사명: 하도급 공사명: ※ 하도급 공사명을 모르는 경우 생략 가능		
	현장주소			
	총공사비	원	신기술 공사비	원
	총공사기간	~	신기술 공사기간	~

2. 활용 평가

평가시기	□ 준공 □ 하자 보수공사 준공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공사비절감	단위당 관련된 비용(시공비, 유지관리비 등)과 기존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의 개선비용을 비교한다.			
	구분	기존 기술(A)	신기술(B)	공사비 절감(A-B)
	단위 수량 ( )	원	원	원
	공사비절감 평가점수 : ( ) - 공사비절감 평가점수 = 15 + [10 ×(기존 기술 공사비 - 신기술 공사비)/기존 기술 공사비] (0~25점)			
공기단축	해당 공정에 대하여 기존 기술과 건설신기술의 공사일수를 비교한다.			
	구분	기존 기술(A)	신기술(B)	단축일수(A-B)
	단위 수량 ( )	일	일	일
	공기단축 평가점수 : ( ) - 공기단축 평가점수 = 15 + [10 ×(기존 기술 공사일수- 신기술 공사일수)/기존 기술 공사일수] (0~25점)			

시공성	세부 평가기준	평가점수				
		매우우수	우수	동등	미흡	매우미흡
	□ 시공용이성	□ +2	□ +1	□ 0	□ -1	□ -2
	□ 신기술시방서 준수	□ +2	□ +1	□ 0	□ -1	□ -2
	□ 타공종과 간섭 축소	□ +2	□ +1	□ 0	□ -1	□ -2
	□ 인력 및 장비 적시 투입	□ +2	□ +1	□ 0	□ -1	□ -2
	시공성 평가점수 : ( ) - 시공성 평가점수 = 15 + [5 ×(세부 평가점수 합)/선택 항목 수] (0~25점)	세부평가 점수합				

품질향상	□ 내구성 향상	□ +2	□ +1	□ 0	□ -1	□ -2
	□ 시공목적물의 완성도	□ +2	□ +1	□ 0	□ -1	□ -2
	□ 시공상의 하자 저감	□ +2	□ +1	□ 0	□ -1	□ -2
	품질향상 평가점수 : ( ) - 품질향상 평가점수 = 15 + [5 ×(세부 평가점수 합)/선택 항목 수] (0~25점)	세부평가 점수합				
친환경성	□ 폐기물처리 및 환경관리 상태	□ +2	□ +1	□ 0	□ -1	□ -2
	□ 환경관련 민원 저감	□ +2	□ +1	□ 0	□ -1	□ -2
	친환경성 평가점수 : ( ) - 친환경성 평가점수 = 15 + [5 ×(세부 평가점수 합)/선택 항목 수] (0~25점)	세부평가 점수합				
안전성	□ 안전사고 저감 효과	□ +2	□ +1	□ 0	□ -1	□ -2
	안전성 평가점수 : ( ) - 안전성 평가점수 = 15 + [5 ×(세부 평가점수 합)/선택 항목 수] (0~25점)	세부평가 점수합				
계	( ) 총 점수 = 공사비 절감 + 공기단축 + 시공성 + 품질향상 + 친환경성 + 안정성의 총합 (최대 150점)					

※ 해당란에 ○표

3. 신기술 활용에 대한 의견(유사한 현장에 적용시 참고 사항)

4. 신기술 활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5. 작성자 및 확인자(비공개)

평가자	소속기관		부서	
	전화번호		직위,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기관		부서	
	전화번호		직위,성명	서명

※ 1. 감리현장: 평가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확인자(발주청 담당자)
2. 발주청 직접 감독현장: 평가자(공사관리관), 확인자(직 상급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심의·자문 요청) ① ~ ② (생 략)	제2조(심의·자문 요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발주청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설명서에 그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	③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사항 : 신기술 후보군으로 선정하게 된 사유와 후보 신기술 간의 차별성	<삭 제>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5조(심의·의결) 위원회는 조례 제5조제1항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의결한다.	제5조(심의·의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사항 가. 선정 : 선정된 신기술의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없거나 그 결함이 경미하여 시행하는	<삭 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것이 바람직한 경우
나. 부적정 :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중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부적정한 경우
다. 조건부 선정 : 선정된 신기술의 심의요청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재심의 :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있어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td><td></td></tr>
<tr><td>3. ~ 5. (생 략)</td><td>3. ~ 5. (현행과 같음)</td></tr>
<tr><td>■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기술 사후평가서

작성일: 년 월 일

1. 신기술 및 공사개요

<table>
<tr><td>신 기 술 명</td><td colspan="4">(지정번호 :)</td></tr>
<tr><td>기술개발자</td><td colspan="4"></td></tr>
</table>

<table>
<tr><td rowspan="6">공사개요</td><td>발주자</td><td colspan="2"></td><td>시공자</td><td></td></tr>
<tr><td>개발자 참여형태</td><td colspan="4">□ 직접참여(기술사용료 미지급) □ 기술지도(기술사용료 지급) □ 자재, 장비 납품</td></tr>
<tr><td>공사명
(계약명)</td><td colspan="4">도급 공사명:
하도급 공사명:
※ 하도급 공사명을 모르는 경우 생략 가능</td></tr>
<tr><td>현장주소</td><td colspan="4"></td></tr>
<tr><td>총공사비</td><td>원</td><td>신기술
공사비</td><td>원</td></tr>
<tr><td>총공사기간</td><td>~</td><td>신기술
공사기간</td><td>~</td></tr>
</table>

2. 활용 평가

<table>
<tr><td>평가시기</td><td>□ 준공 □ 하자 보수공사 준공</td></tr>
</table>
</td><td>▪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기술 사후평가서

작성일: 년 월 일

1. 신기술 및 공사개요

<table>
<tr><td>신 기 술 명</td><td colspan="4">(지정번호 :)</td></tr>
<tr><td>기술개발자</td><td colspan="4"></td></tr>
</table>

<table>
<tr><td rowspan="6">공사개요</td><td>발주자</td><td colspan="2"></td><td>시공자</td><td></td></tr>
<tr><td>개발자 참여형태</td><td colspan="4">□ 직접참여(기술사용료 미지급) □ 기술지도(기술사용료 지급) □ 자재, 장비 납품</td></tr>
<tr><td>공사명
(계약명)</td><td colspan="4">도급 공사명:
하도급 공사명:
※ 하도급 공사명을 모르는 경우 생략 가능</td></tr>
<tr><td>현장주소</td><td colspan="4"></td></tr>
<tr><td>총공사비</td><td>원</td><td>신기술
공사비</td><td>원</td></tr>
<tr><td>총공사기간</td><td>~</td><td>신기술
공사기간</td><td>~</td></tr>
</table>

2. 활용 평가

<table>
<tr><td>평가시기</td><td>□ 준공 □ 하자 보수공사 준공</td></tr>
</table>

<table>
<tr><td>평가
항목</td><td>세부 평가기준</td></tr>
</table>
</td></tr>
</table>

현 행

평가 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평가				
			매우우수 (1.0)	우수 (0.9)	보통 (0.8)	미흡(0.7)	매우미흡(0.6)
공사비 절감	시공비 절감	10					
	시공중 관리비 절감	10					
	타공종의 공사비 절감에 기여	5					
공기단축	공정단순화	10					
	기계화시공(인력 감축)	10					
시공성	시공용이성	10					
	신기술시방서 준수	10					
	타공종과 간섭 축소	5					
	인력 및 장비 적시 투입	10					
품질향상	내구성 향상	10					
	시공목적물의 완성도	10					
	시공상의 하자 저감	10					
친환경성	폐기물처리 및 환경관리 상태	5					
	환경관련 민원 저감	5					
안전성	안전사고 저감 효과	10					
보급활용성	타 현장에 추천	10					
	협력사와의 분쟁 발생 저감	5					
	안전사고 저감	5					
계		150					

※ 해당란에 ○표

3. 신기술 활용에 대한 의견(유사한 현장에 적용시 참고 사항)

4. 신기술 활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5. 작성자 및 확인자(비공개)

평가자	소속기관		부 서	
	전화번호		직위,성명	(서 명)
확인자	소속기관		부 서	
	전화번호		직위,성명	(서 명)

비고

1. 감리현장 : 평가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자(발주청 담당자)
2. 발주청 직접 감독현장 : 평가자(공사관리관), 확인자(직 상급자)

개 정 안

공사비 절감

단위당 관련된 비용(시공비, 유지관리비 등)과 기존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의 개선비용을 비교한다.

구분	기존 기술(A)	신기술(B)	공사비 절감(A-B)
단위 수량 ( )	원	원	원

공사비절감 평가점수 : ( )
- 공사비절감 평가점수 = 15 + [10 ×(기존 기술 공사비 - 신기술 공사비)/ 기존 기술 공사비] (0~25점)

공기 단축

해당 공정에 대하여 기존 기술과 건설신기술의 공사일수를 비교한다.

구분	기존 기술(A)	신기술(B)	단축일수(A-B)
단위 수량 ( )	일	일	일

공기단축 평가점수 : ( )
- 공기단축 평가점수 = 15 + [10 ×(기존 기술 공사일수 - 신기술 공사일수)/ 기존 기술 공사일수] (0~25점)

	세부 평가기준	평가점수				
		매우우수	우수	동등	미흡	매우미흡
시공성	□ 시공용이성	□ +2	□ +1	□ 0	□ -1	□ -2
	□ 신기술시방서 준수	□ +2	□ +1	□ 0	□ -1	□ -2
	□ 타공종과 간섭 축소	□ +2	□ +1	□ 0	□ -1	□ -2
	□ 인력 및 장비 적시 투입	□ +2	□ +1	□ 0	□ -1	□ -2
	시공성 평가점수 : ( ) - 시공성 평가점수 = 15 + [5 ×(세부 평가 점수 합/선택 항목 수)] (0~25점)	세부평가 점수합				
품질향상	□ 내구성 향상	□ +2	□ +1	□ 0	□ -1	□ -2
	□ 시공목적물의 완성도	□ +2	□ +1	□ 0	□ -1	□ -2
	□ 시공상의 하자 저감	□ +2	□ +1	□ 0	□ -1	□ -2
	품질향상 평가점수 : ( ) - 품질향상 평가점수 = 15 + [5 ×(세부 평가점수 합/선택 항목 수)] (0~25점)	세부평가 점수합				
친환경성	□ 폐기물처리 및 환경관리 상태	□ +2	□ +1	□ 0	□ -1	□ -2
	□ 환경관련 민원 저감	□ +2	□ +1	□ 0	□ -1	□ -2
	친환경성 평가점수 : ( ) - 친환경성 평가점수 = 15 + [5 ×(세부 평가점수 합/선택 항목 수)] (0~25점)	세부평가 점수합				
안전성	□ 안전사고 저감 효과	□ +2	□ +1	□ 0	□ -1	□ -2
	안전성 평가점수 : ( ) - 안전성 평가점수 = 15 + [5 ×(세부 평가 점수 합/선택 항목 수)] (0~25점)	세부평가 점수합				
계	( ) 총 점수 = 공사비 절감 + 공기단축 + 시공성 + 품질향상 + 친환경성 + 안정성의 총합 (최대 150점)					

※ 해당란에 ○표

3. 신기술 활용에 대한 의견(유사한 현장에 적용시 참고 사항)

4. 신기술 활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5. 작성자 및 확인자(비공개)

평가자	소속기관		부서	
	전화번호		직위,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기관		부서	
	전화번호		직위,성명	서명

※ 1. 감리현장: 평가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확인자(발주청 담당자)
2. 발주청 직접 감독현장: 평가자(공사관리관), 확인자(직 상급자)